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,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,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 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며,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, 기존 산업 통상자원부의 에너지(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)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,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·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,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,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,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·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,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된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3개의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2 제6호가목 3)의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5호가목 3)의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방시설
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화재의
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) 법 제22조제3항에서 “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 1조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장</u> <u>관이</u>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을 말한다.	제21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) 법 제22조제3항에서 “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 1조에 따라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 한다.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) 법 제25조제3항에서 “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 1조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장 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을 말한다.	제13조(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) 법 제25조제3항에서 “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”이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 1조에 따라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 한다.